

● 제29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620, 1622

### I. 결산안 개요

#### 1. 제안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0. 5. 29.

다. 회부일 : 2020. 6. 9.

### II.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420,548백만원

○ 징수결정액 : 1,427,958백만원

○ 실제수납액 : 1,422,040백만원

○ 미수납액 : 5,917백만원

○ 결손처분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6%(전년도 99.5%)임.

## 〈2019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420,548	1,427,958	1,422,040	5,917	99.6
일반회계	1,410,630	1,418,040	1,412,123	5,917	99.6
세외수입	57,185	78,101	72,184	5,917	92.4
경상적세외수입	606	637	576	61	90.4
임시적세외수입	56,579	77,464	71,608	5,857	92.4
보조금	999,261	988,340	988,340	-	100
국고보조금등	999,261	988,340	988,340	-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4,184	351,599	351,599	-	100
보전수입등	3,712	1,150	1,150	-	100
내부거래	350,472	350,449	350,449	-	100
균형발전특별회계	9,917	9,917	9,917	-	100
보조금	9,917	9,917	9,917	-	100
국고보조금등	9,917	9,917	9,917	-	100

### 2. 세출결산

- 예산액 : 2,763,301백만원
- 예산증감 : 9,773백만원
- 예산현액 : 2,773,074백만원
- 지출액 : 2,722,611백만원
- 이월액 : 17,117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2,336백만원
- 불용액 : 31,00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1%(전년도 3.3%)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1,008	5,068	0	9,814	102	5,039	0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E/A)
총예산	2,773,074	2,722,611	17,117	2,336	31,008	1.1
사업예산계	2,767,277	2,718,309	17,117	2,336	29,513	1.1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73,422	69,440	3,296	-	686	0.9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39,161	36,825	963	130	1,243	3.2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1,868,445	1,857,590	500	314	10,041	0.5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642,177	628,671	3,481	937	9,088	1.4
행복아동을 위한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118,888	101,637	8,877	673	7,700	6.5
글로벌 아동친화도시 조성	24,657	23,655	-	282	719	2.9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527	491	-	-	36	6.8
일반예산계	5,797	4,302	-	-	1,495	25.8
행정운영경비	741	614	-	-	127	17.1
재무활동	5,056	3,688	-	-	1,368	27.1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24건, 5,094백만원

다. 예산 이체 : 66건, 37,059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2건 36,743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10건, 11,402백만원

- 사고이월 : 6건 5,715백만 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 93개 사업, 981,664백만 원 집행

(단위 : 백만 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994,261	985,844	981,664	962	3,221

### 3. 기금결산

○ 성평등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24,441백만 원

- 전년도말 조성액 : 24,306백만 원

- 당해년도 조성액 : 1,170백만 원

- 당해년도 사용액 : 1,036백만 원

- 당해년도말 조성액 : 24,441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9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성평등기금	24,306	134	1,170	1,036	24,441

4. 채권현재액 : 81,140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건물 94,681㎡ 7,836,239 만원,
- 기타 51건 24,817,043 만원,

총 32,653,282만원 상당의 금액임

### 〈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307,205	19,327	-	326,532
행정 재산	계	306,558	19,327	325,885
	공용재산	196,942	17,768	214,710
	공공용재산	109,616	1,559	111,175
	기업용재산	-	-	-
	보존재산	-	-	-
일반재산	647	-	-	647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61개,  
현재액 217백만원

### 〈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62	-	-	-	-	-	-	61
	금액	218	-	-	-	-	-	-	217
일반회계	수량	62	-	-	-	-	-1	-	61
	금액	218	-	-	-	-	-	-	217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세입 결산 검토

#### 가. 세입결산 총괄

##### 1)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4,205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4,280억 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1조 4,22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59억 원으로, 징수율은 99.6%로 나타남.

#### <표 1-1>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
2019년	1,420,548	1,427,958	1,422,040	5,917	99.56
2018년	1,181,619	1,191,123	1,185,404	5,719	99.52
2017년	1,066,155	1,069,156	1,062,939	6,218	99.42
2016년	1,062,799	1,065,219	1,059,915	5,303	99.50
2015년	1,010,185	1,071,945	1,062,412	9,533	99.11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과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로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보조금’의 경우, 전체 세입의 3/2에 해당하는 71%(1조 92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9%(3,542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2019회계연도 주요 세입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2018		2017		2016		2015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1,420,548	100.00	1,181,619	100.00	1,066,155	100.00	1,062,799	100.00	1,010,185	100.00
세외수입	57,185	4.0	25,654	2.17	19,937	1.87	22,322	2.10	6,065	0.60
보조금	1,009,178	71.0	784,818	66.42	688,137	64.54	657,419	61.86	636,670	63.0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4,184	24.9	370,747	31.38	358,081	33.59	383,058	36.04	367,450	36.37
지방 교부세	-	-	400	0.03	-	-	-	-	-	-

## 2)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추이 및 특징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 추이(표 1-1 참조)를 살펴보면, 2015년 1조 102억 원이던 것이 2019년에는 1조 4,205억 원으로 24.2% 증가함.
- 2014년 이후 보조금의 규모가 전체 세입의 2/3%가량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상보육정책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증가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한편, 최근 5개년 동안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원천 추이(표 1-2)를 살펴보면,
  - 주요 세입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절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6,367억 원이던 것이, 2019년에는 1조 92억 원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 동안 40.6% 증가하였음.
  - 2014년도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새로운 세입 항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과거 만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통해 교부되어 왔던 것이, 2013년 이후부터는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내부거래로 전입되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결과임.
  - 이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2015년 3,675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3,707억 원으로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2017년 36%에서 33.6%로 줄어들다가, 2018년 9월 아동수당 신설 이후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로 확대한 2019년에는 2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나.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 1) 미수납액 저감 대책 필요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율(표 1-1참조)은 99.6%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 간의 연도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15년 95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53억 원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 다소 증가하여 62억 원이던 것이 다시 2019년에 59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2018년보다는 2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미수납액의 그 절대액으로 볼 때 2019년 기준 59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할 것인바,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필요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요 예산항목은 관항목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외수입’목으로 구성되는 바, 이 가운데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19년의 경우,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448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이후 실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53배에 해당하는 686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661억 원으로, 총 28억 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됨. 따라서 징수율은 96.3%로 기록됨.

〈표 1-3〉 시·도비반환금 수입 세입 조서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징수율 (B)/(A) (%)
임시직세외수입	56,579	56,579	77,464	71,607	-	5,857	92.44
기타수입	47,440	47,440	72,002	69,328	-	2,674	96.29
사도비반환금수입	44,812	44,812	68,633	66,056	-	2,578	96.25
그외수입	2,628	2,628	3,369	3,273	-	96	97.15

- 시·도비반환금의 대부분은 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주로 보육분야 시비보조금과 관련되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의 미수납 총액(59억 원) 가운데 60%(26억 원)가 바로 ‘시·도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보육분야 예산에 대한 자치구 회수 반환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반환 요구를 통해 적극적 징수 노력 및 징수 대책이 요구됨.

### 3) 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등 과학적 추계 철저 필요

-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예산 계획상 예산추계를 통한 산정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을 말함.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상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 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가능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산세입 추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임.
-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에 20%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이 8개나 발생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도비반환금수입’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48억 원이지만, 실제수납액은 660억 원으로 1.5배에 달하며, 이들 간의 차액은 무려 212억 원에 이르고 있음.(표 1-4 참조) 이는 해당 예산액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추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임.
  - ‘시·도비반환금’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반환금 및 미수납금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전 결산 심사에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 이후 이와 관련된 보육료등의 반납금은 2015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세입추계 철저 및 반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운용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 앞으로 세입추계 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면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표 1-4〉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차액비율)	과부족 상세사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43	12	12	△131	서울여성플라자 시유재산사용료(164백만원)를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기타사용료"로 납부함
	기타사용료	-	164	164	164	서울여성플라자 시유재산사용료(164백만원)를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기타사용료"로 납부함
	기타사업수입	-	34	34	34	여성안심택배 보관료 발생
	기타이자 수입	463	427	366	97	보조사업 이자반납 징수액 발생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도 평균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과다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	1	1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발생(1건)으로 예기치 않은 징수 발생
	시·도비반환 금수입	44,812	68,633	66,056	21,244	자치구 교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예상보다 과다 발생
	그외수입	2,628	3,369	3,273	644	민간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기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에 대한 징수건으로, 최근 3년 평균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과다발생
	지난연도수입	9,139	5,461	2,278	△6,861	지난연도 발생하였으나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납부 건 등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규모 산정 어려움

#### 4)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한 건전재정 훼손

-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과소 교부되거나 미교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표 1-5 참조), 세입의 71%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특성상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미흡한 예산추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임. 향후 중앙부처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건의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1-5〉 국고보조금 과소 및 미교부 사유

연도	사업명(예산과목)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총 23건	791,128,418	446,664,386	344,464,032	779,323,983	434,859,951	344,464,032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008,127	1,107,507	1,900,620	3,004,347	1,103,727	1,900,620	보호시설 운영비 중 직업훈련비가 확정내시 통보 시 3,780천원 감액 변경된 것으로 부족수령 해당없음
2	가정폭력상당소 운영지원	2,740,636	808,840	1,931,796	2,740,555	808,759	1,931,796	국비 최종예산은 808,759,000원으로 실수령액과 일치함
3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69,601,264	17,795,000	51,806,264	68,345,264	16,539,000	51,806,264	대체교사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비수령액감소 (가내시3,258백만원->확정내시2,002백만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	208,647,134	114,781,000	93,866,134	203,577,134	109,711,000	93,866,134	복지부변경내시(2019.11.6.)에따른국비교부액변경 - 2019년 시도별 집행실적 및 집행전망 반영
5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790,659	75,203	1,715,456	1,785,734	70,278	1,715,456	보건복지부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내시
6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979,777	125,000	3,854,777	3,977,277	122,500	3,854,777	보건복지부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내시
7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3,718,021	2,455,000	1,263,021	3,708,021	2,445,000	1,263,021	확정내시 이후 변경 내시(국고 교부액 감소)
8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97,069	71,267	325,802	395,754	69,952	325,802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감소
9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540,946	131,037	409,909	540,909	131,000	409,909	보건복지부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내시
10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5,000,000	5,000,000	-	2,496,000	2,496,000	-	·중앙부처 변경내시 변경 (5,000백만원→2,496백만원).여성가족부가 족정책과-3994(2019.12.27) ·부족분은'20년1,000백만원,'21년1,500백만원 연차별편성예정

연번	사업명(예산과목)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11	아동수당 지원	415,917,783	283,934,359	131,983,424	414,567,783	282,584,359	131,983,424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사업대상인원 감소)12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2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5,784,732	1,976,040	3,808,692	5,737,858	1,929,166	3,808,692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사업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3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207,096	109,548	97,548	199,830	102,282	97,548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사업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275,957	1,365,574	910,383	2,076,063	1,165,680	910,383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사업대상인원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5	입양아동가족지원	3,964,783	1,528,713	2,436,070	3,908,505	1,472,435	2,436,070	변경내시통보(아동복지정책과-4678,2019.10.22.)
1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72,150	36,075	36,075	60,775	24,700	36,075	변경내시 통보(아동권리과-4674, 2019.09.04.)
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54,192	594,000	460,192	797,301	337,109	460,19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3158 (2019.8.20.) 호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변경내시(2차)로 인한 국고보조금 수령액 감소
18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6,849,799	1,101,345	5,748,454	6,429,034	680,580	5,748,454	센터 물량조정 등(가내시:91개소, '18.9.17. / 변경내시: 81개소, '19.8.12.)
19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29,080,513	8,724,154	20,356,359	29,061,443	8,705,084	20,356,359	추경확정후 국비 확정내시액 변경
20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5,444,480	1,633,344	3,811,136	5,429,082	1,617,946	3,811,136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됨
21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54,134	286,240	667,894	951,583	283,689	667,894	평가에따른대상개소수감소액반영
22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설치	19,754,000	2,784,000	16,970,000	19,395,575	2,425,575	16,970,000	센터 물량조정 등(가내시:91개소, '18.9.17. / 변경내시: 81개소, '19.8.12.)
23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45,166	241,140	104,026	138,156	34,130	104,026	공기청정기 수요변경

## 2 세출 결산 검토

### 가. 세출결산 총괄

#### 1)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7,633억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2조 7,731억 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2조 7,226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17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집행 잔액은 310억 원으로 기록됨. 이에 따른 불용률은 3.38%로 나타남.

#### 〈표 2-1〉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비율 B/A(%)
2019	2,763,301	2,773,074	2,722,612	17,117	2,337	31,008	1.11
2018	2,437,654	2,442,506	2,350,600	9,773	1,150	80,983	3.33
2017	2,237,431	2,244,641	2,176,904	4,853		62,884	2.80
2016	2,214,809	2,219,517	2,171,923	7,210		40,384	1.82
2015	2,099,712	2,100,756	2,074,593	2,070,906		25,142	1.20



## 2)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추이 및 특징

- 세출결산 추이(표 2-1 참조)를 예산현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당시 2조 1,008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2조 7,731억 원으로, 총 6,723억 원이 증액된 바, 같은 기간 동안 3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세출 예산의 증가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전면 무상보육제도가 단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18년부터는 만 6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원되면서 또 한번 크게 증가했다 할 것임.
- 한편,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불용률은 1.1%로 이는 전년대비 약 2.2%p가 줄어든 것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불용률을 나타냈음.
  - 불용률이 크게 줄어든 주요 원인은 보육담당관과 가족담당관의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각각 357억 원, 170억 원이 줄어드는 등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의 불용액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불용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1.1%로 전년대비 1/3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3) 최근 5년간, 예산변경 추이

-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각종 예산변경(전

용, 이체, 변경사용)이 발생한 건 수는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20%이상 불용률을 나타낸 사업은 총 11건으로 나타남.

- 2019회계연도에는 전용 및 변경이 각각 24건 및 22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예산변경을 빈번하게 활용한 결과 불용액을 크게 줄이게 된 실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예산변경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아래 <표 2-2>와 같음.

<표 2-2> 최근 5년 간 각종 예산변경 추이

(단위 : 백만 원, 건)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업 및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사용		불용 (20%상)	
	사업수	예산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192	2,773,074	-	-	24	5,094	66	37,059	22	36,743	-	-	11	9,995
2018	172	2,442,507	-	-	10	619	22	66,312	12	23,098	-	-	13	3,366
2017	197	2,244,641	-	-	4	1,129	-	-	17	16,209	-	-	16	8,381
2016	140	2,219,517	-	-	11	10,236	-	-	6	1,501	-	-	5	5,627
2015	154	2,100,756	-	-	14	12,799	30	63,247	17	9,399	1	1,043	10	3,077

- 여성가족정책실 예산변경 사항의 특징은 예비비 사용이나 이용은 전혀 없으나, 전용 및 변경사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줄고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성권익담당관의 신설로 66건, 371억 원의 이체를 사용한 바 있음. 전체적으로는 2016년까지는 각종 예산변경 건수와 금액 모두 상당히 줄어드

는 추세였으나, 2019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건수는 1.5배, 금액은 2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15년 62건(854억 원) → '16년 17건(117억 원) → '17년 21건(173억 원) → '18년 44건(900억) → '19년 112건(789억)).

- 한편 2019년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5년이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나, 금액 면에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사업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이나, 다년도 예산변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2019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2019회계연도 불용률을 부서별로 구분해보면, <표 2-3>과 같음.

<표 2-3> 부서별·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						2018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	
					금액	불용률	금액	불용률
합계	2,773,074	2,722,612	17,117	2,337	31,008	1.1	80,983	3.3
여성정책담당관	74,273	70,225	3,296	-	752	1.0	2,401	2.4
여성권익담당관	39,453	37,110	963	130	1,250	3.2	-	-
보육담당관	1,870,442	1,859,512	500	314	10,116	5.4	45,840	2.4
가족담당관	642,567	629,056	3,481	937	9,094	1.4	26,159	7.8

구 분	2019						2018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불 용 률	금 액	불 용 률
아이돌봄담당관	120,871	102,333	8,877	673	8,988	7.4	5,077	7.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4,712	23,701	-	282	729	2.9	1,440	5.7
아동복지센터	756	676	-	-	80	10.6	66	8.7

- 불용률 수치를 비교해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은 1.0%로 가장 낮았으나, 2019년에 분리된 여성권익담당관과 합칠 경우 1.8%로, 실제적으로는 가족담당관이 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전년대비 불용률과 불용액이 각각 6.4%p, 171억 원이 감소하였음.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불용률과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소관 예산이 전체 실국 예산의 85%에 차지하고 있는 보육담당관의 집행잔액이 357억 원이 줄어든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불용률은 5.4%로 나타났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역시 불용률과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 각각 2.8%p, 7억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여성가족정책실 평균인 1.1%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아이돌봄담당관과 아동복지센터는 각각 7.4%, 10.6%로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불용률 1.1%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특히 아동복지센터의 경우 2019년도 역시 가장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1.9%p가 늘어난 것임.

## 나. 세출결산 주요내역

### 1)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1)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제도를 두고 있음.

〈표 2-4〉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1)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이러한 예산 변경사용 제도를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남용할 경우,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의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의회의 예산심의 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 변경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예산 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의회 보고 등 그 절차와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예산변경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임.

## 가) 예산전용 사례

- 예산전용이란 「지방재정법」제49조<sup>2)</sup>의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의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전용은 총 24건으로 전용금액은 50억 9,39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5>와 같음.

---

2)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표 2-5〉 2019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전용사유
			감	증		
◇ 총 24건			5,093,940	5,093,940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080,826	10,148		11-05	서부여성발전센터수영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긴급 환경개선 공사예산 확보
여성발전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57,762		10,148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16,350	30,075		11-05	
여성발전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67,910		30,075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8,850	189,000		11-05	
여성발전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668,762		189,000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30,000	6,000		09-17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427,061		6,000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9,000	2,500		12-19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341		2,5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762,937	50,000		10-28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410,000		50,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712,937	150,000		10-28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73,300		150,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5,705,264	68,491		12-02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환경개선, 사회적응프로그램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전용사유
			감	증		
영지원	법정운영비 보조					
성매매피해자 시설 기능보강 지원	402-02민 간자본사업 보조 (이 전 재원)	349,242		68,491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원 등 지원시설 및 상 담소 환경개선을 위한 기 능보강 지원
성 폭력 피 해 상 담 소 운영지원	307-10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390,289	1,200		12-1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구매 지원 (국비매칭)
성폭력피해자 시설 기능보강 보호	402-02민 간자본사업 보조 (이 전 재원)	7,914		1,200		
사이버젠더폭력 예 방 및 피해자 지원	201-01 사 무관리비	1,000,000	400,000		08-14	예산의 일부를 과목 변경 하여 피해자 지원사업과 예방교육 운영 등 전문 노 하우를 가진 민간단체를 공모, 선정
사이버젠더폭력 예 방 및 피해자 지원	307-02민 간경상사업 보조			400,000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 운영지원	307-10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562,937	8,840		12-10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 청정기 지원 (신규)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가정폭력 피해자 지 원시설 공기정화장 치 지원	402-02민 간자본사업 보조 (이 전 재원)	13,260		8,840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 영지원	307-10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714,812	9,548		12-0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 기정화기 지원 (국비보조사업의 시비매칭 분 확보)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공기청정기 지 원	402-02민 간자본사업 보조 (이 전 재원)	14,324		9,548		
성 폭력 피 해 상 담 소 운영지원	307-10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389,089	3,200		12-1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구매 지원 (국비매칭)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 기 지원	402-02민 간자본사업 보조 (이 전 재원)	4,800		3,200		
성 폭력 피 해 상 담 소 운영지원	307-10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385,889	2,534		12-1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구매 지원 (국비매칭)
폭력피해 이주여성	402-03민	3,800		2,534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자	전용사유
			감	증		
지원시설 기 지원	공기청정 기 지원	간위탁사업 비				
어린이집 (자체)	운영지원	201-01 사 무관리비	126,500	95,400	04-19	실내공기질 관리센서 설치 사업이 당초 서울시 직접 계약설치 운영에서 자치구 통합발주로 계획 변경됨 에 따른 전용(예산과목 변 경)
어린이집 (자체)	운영지원	405-01 자 산및물품취 득비		95,400		
어린이집 (자체)	운영지원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159,751,71 9	1,560,250	09-30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사업 국비보조금 교 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 한 예산전용
어린이집 (보조)	기능보강	403-01 자 치단체자본 보조	1,851,549	1,560,250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그룹홈 운영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595,705	50,000	10-25	19년추가 기능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을 위해 예산전용 하고자 함 (국비매칭)
아동복지시설 보강	기능	402-02 민 간자본사업 보조 (이 전 재원)	1,719,746	50,000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그룹홈 운영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545,705	26,500	11-21	19년추가 기능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을 위해 예산전용 하고자 함 (국비매칭)
아동복지시설 보강	기능	402-02 민 간자본사업 보조 (이 전 재원)	1,796,746	26,500		
아동급식지원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20,800,000	49,280	05-2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중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 건 립의 사전절차인 정밀안전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예 산 전용
아동복지시설 보강	기능	401-01 시 설비	943,732	49,280		
아동복지시설 지원	운영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1,556,556	300,000	10-3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 전용을 위 한 변경 (국비매칭)
한부모가족자녀 육비 등 지원	양	301-01 사 회보장적수 혜금	44,529,032	300,000		
아동수당 지원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417,417,78 3	1,500,000	10-3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시비부담금확보 (국비매칭)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자	전용사유
			감	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2,129,032		1,500,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0,000	25,808		10-31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국비매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8,712		25,808		
동주민센터내아동돌봄센터 설치 운영(시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0,000	210,000		10-18	아이에게 좋은 시설 조성을 위한 설치비 증액 보조를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통계목으로 전용
동주민센터내아동돌봄센터 설치 운영(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		210,00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5,166	345,166		09-17	공기청정기 지원 지침이 당초 구매비용 지원에서 임대비용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통계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 통계목으로 전용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5,166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취업·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아이돌보미 파견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신규 편성된 국비매칭 사업임 (국시비=3:7).

〈표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퇴소자 및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 후 1년이내의 한부모가족에 한함

□ 지원내용 :

– 기관 파견 아이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 신청)

▫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돌보미 파견 신청 및 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 1명이 2명 이상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시간당 16,500, 1회 3시간 이상

– 가정 파견 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가족 각자 신청)

▫ 당 사업의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1:1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시간당 9,650원, 1회2시간(시간제)~3시간(영아종일제) 이상

※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액이 다르며, 본인부담 지출금액에 대해 당 사업비로 지원

○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당초예산액은 19억 8,000만 원으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감액 조정(2건)하여 예산현액은 10억 542만 원이고 이 가운데 6억 25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636만 원을 제외하여, 나머지 2억 5,689만 원은 불용 처리하여 불용률은 28%로 나타남.

〈표 2-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2019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	예산 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률 (%)
계	1,980,000	-25,808	-900,000	1,054,192	602,500	156,359	256,891	28.0%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80,000	-25,808	-900,000	1,054,192	602,500	156,359	256,891	28.0%

(나) 사업 필요성만 강조해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내시에 따른 불용

- 동 사업은 예산의 감전용과 감변경을 통해 각각 2,581만 원과 9억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5,68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표 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변경 내역

구분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사용액		승인 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	증		
전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8-01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80,000	25,808		10-31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국비매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402-02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8,712		25,808		
변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8-01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80,000	900,000		10-3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시비부담금 확보 (국비매칭)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사회보장 적수혜금	43,629,032		900,000		

- 동 사업은 예산 변경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그 필요성과 수요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신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이나 예산규모

추계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례의 변경내시를 통해 예산을 감액에도 불구하고 28%의 불용이 발생한 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무조건적으로 매칭 시비분을 우선 편성해야하는 불합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나 촉구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전용과 변경 절차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해 연도 말인 10~11월에서야 추진하였는데, 통상 예산 변경 절차가 연도 말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에 필요한 기간과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에 따라 변경 절차를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은 1년 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업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고, 이에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용 등의 제도가 활용될 것이나, 이는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동 사업과 같이 특정 사업에서 여러 번의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설계의 미흡함에서 연유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덧붙여, 동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부모가정의 그 자녀들에 대하여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과 불용비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추계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요구됨.

## 나) 예산 변경사용 사례

- 예산의 변경사용이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변경사용이 아닌 전용에 해당됨.
- 변경사용은 총 22건, 367억 4,255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9>와 같음.

<표 2-9> 2019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전용사유
			감	증		
◇ 총 22건			36,742,548	36,742,548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651,176	12,000		09-2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국비매칭)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463,908		12,000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41,783	1,500		11-27	2019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 증가분 확보(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25,214		1,500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40,283	49,994		11-27	2019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 증가분 확보(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70,420		49,99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8,930	12,650		08-14	국비100%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을 별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전용사유
			감	증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12,650		도로 편성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50,459,091	2,414,066		11-2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매 칭 시비 확보를 위해 어린 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 일부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46,191,143		2,414,066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65,671,120	10,464,789		10-08	누리과정 담임수당 부족분 확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35,726,354		10,464,789		
가정양육수당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12,982,521	4,335,387		11-12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증 액 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일부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56,451,971		4,335,387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58,186,469	7,727,378		11-25	영유아 보육료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 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 원(자체) 예산 일부 변경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651,509,052		7,727,378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58,191,469	5,000		11-12	시간제보육 국비 변경 내시 로 인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자 체) 예산 일부 변경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515,937		5,0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01 사무관리비	150,000	5,000		01-30	보육단체 워크숍 추진을 위 한 예산 변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03 행사운영비			5,0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5,467,195	1,074,677		12-0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 산부족(지역아동복지센터와 민간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실질임금 대비 편성 예산액 부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61,256,556		1,074,67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5,501,690	34,495		10-30	추가 지원 필요 아동 발생 으로 인한 국고 보조금(증 액) 변경, 그에 따른 시비 매칭금 확보(국비매칭)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	149,731		34,495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19,096	12,000		10-22	2019년드림스타트국고보조 금변경내시(증액)에따른시 비확보를위한예산변경사용 (국비매칭)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7,774,500		12,000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전용사유
			감	증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657,540	1,754,968		10-3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 원 사업 예산 전용을 위한 변경 (국비매칭)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4,829,032		1,754,96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980,000	900,000		10-3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시비부담금 확보(국비 매칭)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3,629,032		900,000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579,891	150,000		08-22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중복 철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변경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150,000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403-01 자치단체자 본보조	1,000,000	4,100		11-01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 확보(국비매 칭)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403-01 자치단체자 본보조	12,300		4,100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403-01 자치단체자 본보조	6,960,000	6,960,000		02-13	국비 지원 항목인 설치비와 인건비가 개별사업으로 세 분화되어 편성됨에 따라, 우리시 운영 세부사업 세분 화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403-01 자치단체자 본보조			6,960,00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403-01 자치단체자 본보조	361,710	16,544		09-01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예산 잔액 활용, 청소 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 청정기 구매지원 보조금 확보(국비매칭)
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16,544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6-01 기타자본이전	1,000,000	769,000		10-22	공사범위 변경으로 예정공 사비가 늘어나 임차보증금 잔액을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용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1,200,000		769,000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6-01 기타자본이전	231,000	32,000		10-22	공사범위 변경으로 예정공 사비가 늘어나 임차보증금 잔액을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용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1-02 감리비			32,000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6-01 기타자본이전	199,000	7,000		10-22	공사범위 변경으로 예정공 사비가 늘어나 임차보증금 잔액을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용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7,000		



## ◇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은 일반형 키움센터가 아동 20명 가량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제공 및 상담실 운영, 양육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내 초등 돌봄 허브 역할을 수행할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2-10>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 내용

구분	내용
기능	초등 돌봄기관 거점으로서, 아동주도의 문화·예술 체험형 놀이·학습기회 제공하고, 지역내 돌봄자원의 연계, 일반형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등 중소규모 돌봄기관의 컨설턴트 역할 수행
운영	시립시설로 운영하고, 통학차량 운행을 통해 일반형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과 연계하여 아동 이동의 안전성과 접근성 강화
입지	주변 초등돌봄자원, 기관 등과의 연계 가능성, 학교 등 교육인프라, 돌봄수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입지 선정 추진
규모	아동 1명당 최소 7㎡ 이상 면적으로 선진국 수준 공간제공 * 100명 이상 아이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최소 1,000㎡ 이상 규모 추진

-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은 35억 원으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통계목간 예산변경 후, 이 가운데 3억 7,221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 전액을 31억 2,7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음.

〈표 2-11〉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 2019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계	3,500,000	-	3,500,000	372,213	3,127,787	0	0.0%
201-01 사무관리비	250,000	-	250,000	155,000	95,000	0	0.0%
401-01 시설비	1,200,000	769,000	1,969,000	24,463	1,944,537	-	0.0%
401-02 감리비	-	32,000	32,000	-	32,000	-	0.0%
401-03 시설부대비	-	7,000	7,000	750	6,250	-	0.0%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050,000	-	1,050,000	-	1,050,000	-	0.0%
406-01 기타자본이 전	1,000,000	△808,000	192,000	192,000	-	-	0.0%

(나) 부실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변경 발생

- 동 사업은 2019년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최초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일괄 시설비로 편성요청한 바, 이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보증금은 기타자본이전, 공사 감리비는 감리비, 자산이나 물품의 취득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 할 것임.

〈표 2-11〉 2019년 추경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산출내역
시설비	-	3,500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형키움센터(1개소) 조성 : 35억원</li> <li>- <u>임차료 : 6억원(보증금 포함)</u></li> <li>- <u>설계·감리</u> 및 공사비 : 18억원</li> <li>- <u>기자재비</u> : 6억원</li> <li>- <u>통학버스 구입</u> : 5억원</li> </ul>

○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3건의 예산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공사 범위를 변경하고, 공사비 현실화와 미편성된 감리비(건축, 소방) 및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것임.

〈표 2-13〉 2019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변경 세부 사유
				감액	증액		
1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6-01 기타자본이전	1,000,000	769,000		10-22	공사범위 변경으로 예정공사비가 늘어나 임차보증금 잔액을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용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1,200,000		769,000		
2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6-01 기타자본이전	231,000	32,000		10-22	공사범위 변경으로 예정공사비가 늘어나 임차보증금 잔액을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용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1-02 감리비			32,000		
3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6-01 기타자본이전	199,000	7,000		10-22	공사범위 변경으로 예정공사비가 늘어나 임차보증금 잔액을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용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7,000		

- 이 역시 동 사업이 부실한 계획을 가지고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임.

#### (다) 추경편성 이후, 예산의 89%를 이월

-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거점센터 설치를 위한 실제적인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예산 현액의 89%에 해당하는 31억 2,7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철거 및 구조안전진단 시행 필요 등 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하고, 설계 및 공사 일정 변경에 따라 사무 공간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도 이월”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거점형키움센터 설치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연도 내에(6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동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되었는지를 반증한다 할 것임.
- 동 사업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추경을 통해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한편, 일반형과 융합형 키움센터의 설치비와 운영비가 편성된 ‘다함께 돌

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사업에서도 최초 계획 보다 센터 설치가 지연되어, 설치비는 이월하고 운영비는 불용되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가 포함된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은 91개소(기존 4, 신규 87)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실집행은 50개소(기존 4, 신규 46)에만 지원하게 되어 불용률은 무려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4〉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업, 2019년 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내역
총 계	6,849,799	3,337,319	48.7	
사무관리비	500,000	500,000	100.0	세움가이드라인 제작, 홍보콘텐츠 제작, 협의회 운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비용 등 지출
시책업무추진비	6,000	5,972	99.5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전산개발비	140,576	137,364	97.7	우리동네키움포털 구축 비용 지출
자치단체경상보조	6,203,223	2,693,983	43.4	예산편성 : 91개소(기존 4, 신규 87) 실집행 : 50개소(기존 4, 신규 46) ※ 4/4분기 기준

- 동 사업은 국공립 확충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돌봄까지 확장함으로써 서울의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부모의 부담은 덜

어주기 위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절차에 계획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 2) 예산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 예산의 이월은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sup>3)</sup>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sup>4)</sup>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sup>5)</sup>

---

3)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표 2-15〉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구분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5건, 57억 1,417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6>과 같음.

〈표 2-16〉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 2019년 총 5건						
2019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19,515,953	19,456,713	16,161,086	3,295,627	스페이스살림 공사비 집행시 기 미도래에 따른 예산 미집 행으로 사고이월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9	출생축하용품 지원	7,875,949	6,764,658	4,566,945	2,197,713	계약기간이 '20.3월까지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이월함
2019	아동친화도시 추진	790,000	767,169	700,960	66,209	서울특별시 아동 종합실태조사 용역' 과업보완 지시에 따른 기간연장 및 '2019년 아동영향 평가(시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019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 운영지원	5,002,244	4,994,457	4,899,742	94,715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보완 지시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01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6,959,676	76,589,484	76,529,304	59,909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계약일'19.10.31./ 체결되어 9개월간 진행됨에 따라 '20.7월 말. 용역준공기한이 도래)
◇ 2018년 총 3건						
2018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13,706,200	13,689,000	5,635,247	8,035,753	건축 및 감리용역 2차 준공기한이 '19.7월까지로 준공금 등 집행시기 미도래
2018	서울상상나라 운영	3,702,021	3,581,150	3,502,290	78,860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2018.12.5~2019.6.2)
2018	출산가정 출산축 하용품 지원	4,125,000	3,313,024	2,130,074	1,182,949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
◇ 2017년 총 4건						
2017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4,320,500	4,313,525	1,705,525	778,000	장기계속계약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017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67,886	1,969,510	1,279,189	690,321	안심이 확대구축 사업추진 시 사전절차수행으로 인한 수행기간 부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
2017	아동친화도시 추 진	405,000	395,000	173,371	221,629	용역계약기간이 2018.1월까지여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227,657	2,195,864	1,043,166	1,152,698	공사 발주주체 변경 및 재설계 등 설계지연과 공사지연
◇ 2016년 총 1건						
2016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7,400,345	9,702,411	5,755,550	3,954,862	1분기에 공사 발주하였으나, 건물 안전진단 및 보강 등 추가로 준공시기 연기되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함

-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 114억 225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7>과 같음.

**<표 2-17> 최근 3년간 명시이월 발생 현황**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 2019년 총 5건						
2019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023,300	60,300	60,300	963,000	영보자애원 기능보강공사 착공전 단계인 국유지매입이 11월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사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함.
2019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시범사업	500,000	-	-	500,000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모신청한 3개 자치구가 모두 사업신청 취소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함
201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932,526	1,869,062	1,869,062	1,062,464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은 '19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2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추진절차상 금년 내에 리모델링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이월액 발생 예상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9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19,754,000	13,217,283	13,217,283	5,749,000	자치구에서 적정 공간 확보 애로 등으로 집행 지연되어, '19년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일부 명시이월
2019	거점형키움센터 조성(균형발전특별회계)	3,500,000	437,993	372,213	3,127,787	사업관련 이해관계당사자(지역아동센터)와의 협의 지연 및 초등돌봄시설에 적합한 대상지(건물) 확보에 시일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추진
◇ 2018년 총 1건						
2018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2,699,994	2,033,149	2,033,149	457,720	근거리 타건물 공사 및 입주 기업 민원에 따라 공동작업장 공사 시기 조정(19.4월 이후 추진)
◇ 2017년 총 2건						
2017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2,227,657	2,195,864	1,043,166	1,152,698	공사 발주주체 변경 및 재설계 등 설계지연과 공사지연
2017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180,000			180,000	디딤플라자 건립 민간투자 유치 위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회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18년 상반기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예정으로 명시이월 필요

## ◇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을 통한 실질적 경제적 혜택으로 출생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하는 전액시비 사업임.

-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66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8,29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8억 7,595만 원이고, 이 가운데 45억 6,695만 원이 집행되고 21억 9,771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11억 1,129만 원이 불용처리된 바, 불용률은 14.1%로 나타남.

〈표 2-18〉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2019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불용액	불용률 (%)
계	6,693,000	1,182,949	7,875,949	4,566,945	2,197,7136	1,111,291	14.1
201-01 사무관리비	330,000	31,537	361,537	335,0295		26,508	7.3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363,000	1,151,413	7,514,413	4,231,916	2,197,7136	1,084,784	14.4

(나) 다음연도 집행을 위한 사고이월 후, 불용액 11억 원 발생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최소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예산 확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원 일정이 늦춰지게 되므로, 2019년

1~2월 출생아 대상 출생축하용품 연속적으로 지원을 위해 2018년 계약 업체와 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이월을 추진하였고, 8억 1,198만원이 불용 되었음(불용률 19.6%).

〈표 2-19〉 2018년도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추진일정(안)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275,000	
사업계획 수립	2018.01~2018.03		사업계획 수립
품목 및 납품업체 선정	2018.01~2018.06		출산축하용품 품목 및 납품 업체 선정
<b>출산용품 지원</b>	<b>2018.07~2018.12</b>	<b>3,775,000</b>	<b>출산축하용품 지원</b>
홍보	2018.01~2018.	500,000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련 홍보

- 그런데 2019년회계연도 결산조서에 따르면, 2018년도와 동일한 사고이월과 11억 원의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2018년 사업 첫해에 지속적인 물품 지급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을 어기고 이월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2년차인 2019년에도 동일한 예산 사용과 집행방식을 반복한데 있음.

〈표 2-20〉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개요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계약기간	‘18.6.4. ~ ‘19.3.31. (‘19.1.1~‘19.3.31. 계약연장)	‘19.3.13. ~ ‘20.4.30.
업체	(주)휴비덕	(주) 청밀, (주) 베이비뉴스 공동수급
지원대상	37,750명 예상 (‘18.7월~‘19.2월 신청기준)	60,600명 예상 (‘19.4월~‘20.3월 신청기준)
지원실적		38,525명 (‘19.4월 ~ ‘19.12.30. 발송완료 기준)
계약금액	3,158백만원 (물품 3,008,135,700원, 배송비 150,406,800원)	5,084백만원 (물품, 배송비 포함)
지원내용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 지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배하여 반복적으로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통하여 출생축하용품 지급의 지속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동 사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된 점을 감안할 때, 사업 계획에 대한 보다 적법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타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잦은 이월의 반복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감소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매년 8억 원, 11억 원에 달하는 불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 아동 수 예측 및 예산 규모 산출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 자치구간 형평성 및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

-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시설·변경사업의 대한 협의 결과(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996, 2018.02.28.), “출산장려금 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의 유사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음.

**〈표 2-2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성 인정됨</li> <li>○ 다만, 사업취지·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의 유사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li> </ul> </li> </ul>

- 또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축하용품과 축하금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그런데, 자치구별 출생축하용품 및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그 간 서울시는 중복지원 및 자치구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여줘야 할 것임.

〈표 2-22〉 자치구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자치구	출산축하금 현황						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19년 예산액	
1	종로구	300	1,000	1,500	1,500	1,500	481,000	부 또는 모가 10개월 거주
2	중구	200	1,000	2,000	3,000	5,000	350,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3	용산구	100	200	500	1,000	1,000	230,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4	성동구	-	200	1,000	1,500	1,500	262,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5	광진구	100	300	500	1,000	5,000	519,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6	동대문구	100	600	1,000	2,000	3,000	758,600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7	중랑구	100	500	1,000	2,000	2,000	790,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8	성북구	100	300	500	1,000	1,000	477,000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9	강북구	-	300	600	1,000	1,500	285,000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10	도봉구	100	300	500	1,000	1,000	370,000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11	노원구	-	200	500	1,000	1,000	410,000	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
12	은평구	100	350	700	1,000	2,000	689,05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13	서대문구	100	200	500	500	500	345,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14	마포구	100	500	1,000	3,000	5,000	845,600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15	양천구	-	500	700	1,000	2,000	812,000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16	강서구	100	500	1,000	1,500	2,000	1,334,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17	구로구	-	300	600	2,000	2,000	476,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18	금천구	-	500	700	1,000	1,000	390,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구분	자치구	출산축하금 현황						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19년 예산액	
19	영등포구	100	500	3,000	5,000	5,000	1,116,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20	동작구	300	500	1,000	2,000	2,000	1,216,000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21	관악구	100	200	300	500	1,000	335,000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
22	서초구	-	500	1,000	1,000	1,000	680,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23	강남구	300	1,000	3,000	5,000	5,000	1,730,0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24	송파구	-	300	500	1,000	1,000	750,000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
25	강동구	100	200	500	1,000	1,000	566,400	부 또는 모가 1년 거주

자료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2019)

〈표 2-23〉 자치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황

연번	자치구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주요내용	지원시작시기
1	광진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185부터)	'18.5월부터
2	동대문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28,000원상당 물품: 기저귀, 물티슈	첫째아: '16.1월부터 모든출생아: '19.1월부터
3	도봉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	'17.11월부터
4	은평구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15만원상당 상품권	'10.1월부터
5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급	다자녀 입학축하 상품권(셋째아부터)	'10.6월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	'17.11월부터
6	양천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	'17.9월부터
7	영등포구	북스타트 사업	관내 18개월이하 영유아 및 양육자 대상으로 책꾸러미 (그림책2권, 가이드북, 추천도서목록 등)을 제공	'19.1월 부터



8	동작구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셋째아 이후 구와 계약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1인당 2만원 이내, 5년간 지원)	'11.1월부터
9	관악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과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세정제세트 지원	'17.9월부터
10	서초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1. 첫째 : 물티슈(관내 기업 업무협약) 2. 셋째이상 : 육아용품꾸러미(관내 기업 업무협약) 3. 모든출산가정 : 육아의류용품세트 2종 택1(구비)	1. '11년부터 2. '11년부터 3. '18년부터
11	송파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과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세정제세트 지원	'17.8월부터
12	강동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출생신고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 1. 핸드습세트 (민간기업 라이온코리아와 협약) 2. 영유아기저귀 (구비 사업)	'17년부터

자료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2019)

- 한편 2019년 계약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이에 따른 복수의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과 절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3) 불용 과다 사업

- 예산의 불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동의 하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명분이나,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 양태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그 불용사유가 집행의지가 없어서 업무를 지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해당 부서의 직무태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는 바, 이에 대한 엄정한 질책과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안일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2019회계연도 불용액 20%이상 사업은 총 11건이며,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38건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4> 및 <표 2-25>와 같음.

**<표 2-24> 불용액 20%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보조금 반납금 (다)	불용		
					불용액 (라)	불용률 (라)/(가)	불용사유
◇ 불용률 20%이상 사업 : 총 11건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00,000	78,853	-	21,147	21.1%	대상자 1명 사망, 1명 전출 등의 사유로 집행금 잔액 발생
2	기본경비	251,214	185,423	-	65,791	26.2%	여비집행잔액이 65,749천원으로, 여비집행사유 미발생(국내 관내 및 관외출장)
3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5,000,000	2,496,000	-	2,504,000	50.1%	중앙부처 변경내시 변경으로 차액 미교부 (5,000백만원 → 2,496백만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3994(2019.12.27.))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72,150	40,387	4,507	27,257	37.8%	지원아동수 감소('18년 790명 → '19년 631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628,440원) 발생 19.09.04.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72,150천원 → 49,400천원)에 따른 시비 불용 발생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보조금 반납금 (다)	불용		
					불용액 (라)	불용률 (라)/(가)	불용사유
6	한부모가족복지시 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54,192	602,500	156,359	295,333	28.0%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량 과다계상에 따른 국비 보조금 감액 → 시비 부담분 발생(여성 가족부가족 지원과-3158 (2019.8.20.)
7	다함께 돌봄(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 영)	6,849,799	3,337,319	246,029	3,266,451	47.7%	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집행률 저조
8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자체)	8,455,660	6,416,721	-	2,038,939	24.1%	지역아동센터와 협의 지연, 지역 아동센터의 구립전환 수요 부족 등에 따라 융합형 키움센터 설 치·운영 예산 불용
9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54,134	606,904	101,618	245,612	25.7%	평가방식 반발 시설의 보조금 미신청
10	지역아동센터 공기 청정기 지원	345,166	95,200	5,570	244,396	70.8%	국비확정내시액 감소(345백만 원→114백만원) 및 국비교부 지연
11	국고보조금 반환	1,936,574	650,502	-	1,286,072	66.4%	아이돌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발 급고지서 발급 지연 등

## 〈표 2-25〉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 총 38건								
1	여성인력개발센 터 지정운영	5,351,676	5,248,366	-	-	103,310	1.9%	장애센터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절감 (45,700천원) 및 법인의 문제 등 으로 취업활성화사업비(20,000천 원) 미지급, 기타 월세 차익금
2	안심귀가스카우 트	4,866,688	4,728,833	-	-	137,855	2.8%	자치구에서 선발된 스카우트 대원 중 중도포기자 인건비 불용액 등
3	성매매피해자 지 원시설 및 상담 소 운영지원	6,143,358	5,578,883	-	-	564,475	9.2%	시설 종사자 변동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집행 잔액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4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383,355	3,118,287	-	33,638	231,430	6.8%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18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 후 잔액
5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000,000	898,029	-	-	101,971	10.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비 잔액 발생
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48,184,525	146,981,865	-	-	1,202,660	0.8%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취소 및 종료에 따른 지원시설 수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7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69,601,264	68,031,264	-	314,000	1,256,000	1.8%	국비 감액내시로 인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8	가정양육수당 지원	208,647,134	203,574,856	-	-	5,072,278	2.4%	국비 감액내시로 인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991,000	18,816,427	-	-	174,573	0.9%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 등 집행 잔액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54,192,783	52,263,573	-	-	1,929,210	3.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비 집행잔액(확충목표: 100개소, 실적 : 103개소)
11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5,000,000	2,496,000	-	-	2,504,000	50.1%	중앙부처 변경내시 변경(5,000백만원 → 2,496백만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994(2019.12.27)
12	아동수당 지원	415,917,783	414,470,360	-	-	1,447,423	0.3%	지역별 예상 평균 수급률을 적용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출생률 감소로 인한 대상 아동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
13	출생축하용품 지원	7,875,949	4,566,945	2,197,713	-	1,111,291	14.1%	출생축하용품 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1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6,959,676	76,529,304	59,909	-	370,463	0.5%	○ 사업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발생 ○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3,000명 → 2,800명)로 아동수에 따른 시설 운영 추가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15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4,680,790	4,493,572	-	-	187,218	4.0%	전년 사업량을 감안(3,000명) 예산 편성했으나,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2,800명)로 집행잔액 발생
1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275,957	1,941,000	-	1,080	333,877	14.7%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 발생('19년 시범사업)
17	입양아동가족지원	3,964,783	3,571,027	-	97,395	296,361	7.5%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529백만원 → 1,472백만원)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및 지원아동 수 감소(1,674명 예산편성→ 1,574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008,900	2,448,309	-	-	560,591	18.6%	전년 사업량을 감안(1,010명) 예산 편성하였으나, 대상아동수 감소(873명 지원)로 예산불용 발생
19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707,500	1,413,705	-	117,518	176,277	10.3%	○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과다 책정(책정 3,897명/월, 실지원 3,855명/월) ○ 최대매칭적립액은 월4만원이나, 4만원이하 적립아동 발생에따른 매칭지원금 불용
20	아동급식지원	20,750,720	20,620,058	-	-	130,662	0.6%	2019년 아동급식 지원인원 약7% 감소
21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운영지원	8,287,000	7,806,039	-	-	480,961	5.8%	정원대비 입소인원 감소로 인건비, 운영비 불용액 발생
2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6,584,000	45,843,268	-	370,366	370,366	0.8%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당초42,129백만원→변경46,584백만원) 등에 따른 자치구 지원예산의 실 집행잔액
2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4,902,572	4,631,515	-	-	271,057	5.5%	○ 2015년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으로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의 지속적 감소 ○ 10,177가구('17년,전년대비 12%감소) → 9,590가구('18년, 전년대비5.7%감소) → 8,135가구('19년, 전년 대비 15.1% 감소)
24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54,192	602,500	-	156,359	295,333	28.0%	해당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2차 변경내시를 통해 전체 사업비 감액
25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2,608,441	2,394,851	-	-	213,590	8.2%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지원 신청 공동체 수 부족 및 열린 육아방 리모델링비 절감 등
26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6,849,799	3,337,319	-	246,029	3,266,451	47.7%	키움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집행률 저조
27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8,455,660	6,416,721	-	-	2,038,939	24.1%	자치구 센터 공간발굴 지연, 지역아동센터와 협의 지체, 지역아동센터의 구립전환 수요 부족 등에 따라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운영예산 불용
28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29,080,513	28,782,918	-	72,007	225,588	0.8%	지역아동센터 아동수 감소에 따른 휴·폐업 등 지원 대상 변동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
29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5,444,480	5,155,153	-	71,723	217,604	4.0%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변동, 중도 퇴사자 발생 등의 사유로 연초 편성한 예산액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
30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54,134	606,904	-	101,618	245,612	25.7%	평가방식 반발 시설의 보조금 미신청
3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310,000	1,809,066	-	150,280	350,654	15.2%	지원조건 제한 등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률 저조
32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19,754,000	13,217,283	5,749,000	-	787,717	4.0%	연내 집행이 곤란하였던 임차보증금 등 일부 예산 5,749백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 잔액이 불용됨
33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45,166	95,200	-	5,570	244,396	70.8%	공기청정기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
34	국고보조금 반환	1,936,574	650,502	-	-	1,286,072	66.4%	아이돌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발급 고지서 발급 지연 등
35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운영	7,837,286	7,319,147	-	255,635	262,504	3.3%	여성가족부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증가, 사업 수요 대비 사업 물량이 과다하게 교부되어 집행잔액 발생
36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지원	1,204,498	1,095,841	-	-	108,657	9.0%	운영기관 신청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기관 보조금지원액 결정에 따른 잔액 발생
37	다문화자녀 학습 지원	709,000	596,697	-	-	112,303	15.8%	운영기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사업추진 미흡하여 집행잔액 발생
38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 설치·운영	7,382,466	7,279,531	-	-	102,93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빌리지센터(6개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및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리모델링비 11백만원 불용</li> <li>○ 제2글로벌센터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0천원을 대상지 미확보로 불용</li> </ul>

## ◇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

###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세부사업 가운데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수당 지원 등’은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따른 국비매칭(국시비=4:6) 사업이며,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고등학생)’ 지원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됨.
-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39억 6,478만 원으로, 이 가운데 35억 7,103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반납할 국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636만 원은 불용(불용률 7.47%)된 것으로 나타남.

〈표 2-26〉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2019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률(%)
입양아동가족지원	3,964,783	3,571,027	97,395	296,361	7.47
사회보장적수혜금	3,964,783	3,571,027	97,395	296,361	7.47

## 나) 입양아동 지속적 감소와 불용 발생에 따른 예산운영 개선 필요

- 동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세부사업 가운데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수당 지원 등’은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따른 국비매칭(국시비=4:6) 사업이며,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고등학생)’ 지원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됨.

## 다) 결산작성 기준 변경에 따른 불용액과 불용률 축소 착시효과 주의

- 2011년 이후 입양가족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당시 28억 원이던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최대 58억 원에 이르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약 1.8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9년 예산의 경우, 2015년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액 조치되고 있는 바, 전년보다 2억 6,386만원이 줄어들었음.

### 〈표 2-27〉 연도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당초예산	이.전용.변경사용	예산현액	집행	보조급반납금	불용	불용률 (%)
2019	3,964,783		3,964,783	3,571,027	97,395	296,361	7.47
2018	4,228,638		4,228,638	3,593,592	(204,916)	635,046	1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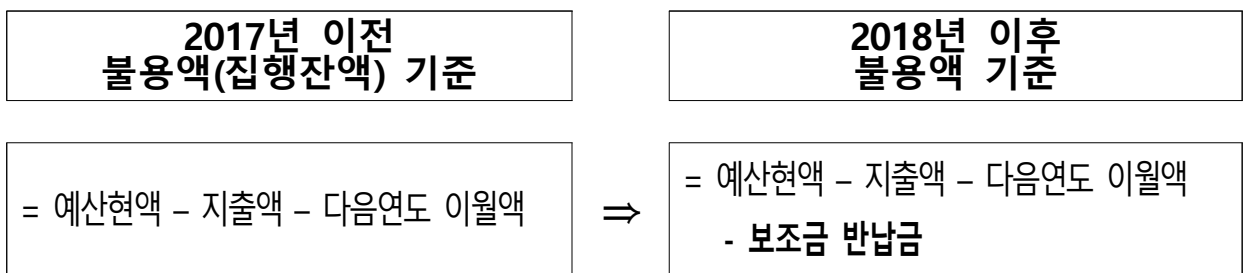


연도	당초예산	이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집행	보조금 반납금	불용	불용률 (%)
2017	4,763,661		4,763,661	3,790,762		972,899	20.42
2016	5,116,810	△531,000	4,585,810	3,894,117		691,693	15.08
2015	5,810,942		5,810,942	3,824,454		1,986,488	34.19

○ 한편 2018회계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의 변경에 따라 불용액의 기준이 기존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내년도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액수인 보조금반납금까지 감하도록 하여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실제로는 불용규모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불용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할 수 있음.

※ 보조금반납금은 보조금실수령액에서 집행액을 제한 금액

〈그림〉 불용액(집행잔액) 기준의 변경



○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보조금 반납금을 불용액에 포함시키면 불용액은 2억 9,636만 원에서 3억 9,376억 원으로 불용률도 4.5%

에서 9.9%로 높아지는 바, 연도별 불용추이를 검토할 때 불용액의 기준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기준변경을 적용하게 된 첫해인 2018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의 경우만 봐도, 실제로는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억 492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년도 결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용액과 불용률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2-28〉 변경된 불용기준에 따른 2018회계년도 사업 결산

연도	당초예산	이.전용.변경사용	예산현액	집행	보조금 반납금	불용	불용률 (%)
2018	4,228,638		4,228,638	3,593,592		635,046	15.02
					↓	↓	↓
2018	4,228,638		4,228,638	3,593,592	204,916	430,131	10.17

- 이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실적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결산이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중요한 환류(feedback)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세입세출의 계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에는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같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결산을 작성해야 할 것임.

## 다)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필요

-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의 취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 동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체계상 입양가족이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그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입양특례법」이 2011년 전부개정 되면서 가정법원 허가제와 양 부모 자격이 강화됨으로써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입양사태가 급감하고 있는 바, 실인원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예산편성 철 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표 2-29〉 연도별 입양 아동수

(단위 : 명, %)

구분	계	2010년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48,690 (100.0)	235,630 (100.0)	2,464 (100.0)	1,880 (100.0)	922 (100.0)	1,172 (100.0)	1,057 (100.0)	880 (100.0)	863 (100.0)	681 (100.0)	666 (100.0)
국내	80,842 (32.5)	72,947 (31.0)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65 (54.8%)
국외	167,848 (67.5)	162,683 (69.0)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01 (45.2%)

※ 2019년 자료는 보건복지부 국가통계 수합중으로, 서울시 입양기관(4개소)의 수치임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 1종이 운영 중임. 동 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 총액은 244억 4,052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243억 608만 원)에서 2019회계연도에 11억 7,021만 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이 가운데 10억 3,577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것임.

〈표 3-1〉 2019년도 성평등기금 조성 총괄표

(단위 : 천 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8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24,306,075	134,441	1,170,213	1,035,772	24,440,516

- 2019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의 주요 원천은 ‘전입금(35.8%)’과 ‘이자수입(33.8%)’, 그리고 ‘예치금회수(30.2%)’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60.6%)’와 ‘예치금(38.2%)’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내역

(단위 : 천 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계	1,676,288	100.0	계	1,676,288	100.0
전입금	600,000	35.8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1,016,322	60.6
용자회수	-	-			
예탁금원금회수	-	-	기본경비	19,450	1.2
예치금회수	506,075	30.2	예치금	640,516	38.2
이자수입	566,989	33.8			
기타수입	3,224	0.2	예탁금	-	-

## 나.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 1) 기금 운용의 적합성 문제 및 재원확보의 한계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성평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 2016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금의 명칭이 ‘여성발전기금’에서 현행 ‘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된 바 있음.
- 2019년 한 해 동안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 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총 50개 단체(사업)에 총 9억 2,372만 원을 지원함.

**<표 3-3> 최근 5년간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지원액	598,646	695,400	840,537	748,851	<b>923,715</b>
	단체수	44	44	54	38	<b>50</b>
	단체별 평균 지원액	13,303	15,804	15,605	19,707	<b>18,474</b>
자유 공모	지원액	168,086	97,600	117,300	126,802	<b>365,159</b>
	단체수	12	5	7	7	<b>21</b>
	단체별 평균 지원액	14,007	19,520	16,757	18,115	<b>17,388</b>
지정 공모	지원액	430,560	597,800	723,237	622,049	<b>558,556</b>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체수	33	39	47	31	29
	단체별 평균 지원액	13,047	15,328	15,388	20,066	19,260

- 이런 점에서 동 기금이 갖는 상징성은 일정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하나, 앞서 <표 3-2>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35.8%에 이르고 있고, 전입금으로 기금이라는 예산운용방식을 빌어 해당 고유목적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러한 재원조달방식은 기금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 및 사업 수행에 내실화가 필요함.

## 2) 예치금 과다의 문제 개선 필요

-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용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미진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은행금고와 재정투융자 기금에 과도하게 예치·예탁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최근 5개년 동안의 성평등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고유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치·예탁금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예치·예탁금의 최근 5개년 평균 비율이 전체 기금지출액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고유목적 사업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3-4〉 연도별 성평등기금 운용내역 내역

(단위 : 천 원)

기금	지출액						
	계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예탁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4	1,506,684	1,136,807	75.45%	41,490	2.75%	328,387	21.80%
2015	843,910	598,287	70.89%	40,637	4.82%	204,986	24.29%
2016	905,214	676,102	74.69%	42,968	4.75%	186,144	20.56%
2017	1,149,346	899,475	78.26%	15,184	1.32%	234,687	20.42%
2018	1,363,617	839,019	61.53%	18,523	1.36%	506,075	37.11%
<b>2019</b>	<b>1,676,288</b>	<b>1,016,322</b>	<b>60.63%</b>	<b>19,450</b>	<b>1.16%</b>	<b>640,516</b>	<b>38.21%</b>
<b>평균</b>	<b>1,240,843</b>	<b>861,002</b>	<b>70.24%</b>	<b>29,708</b>	<b>2.69%</b>	<b>350,132</b>	<b>27.06%</b>